경찰, 자살정보 공유만 해도 처벌

내일부터 자살예방법 시행…적극 내·수사
자살 모집·구체 방법 제시·위해물건 판매 등
차단·삭제 병행…긴급구조대상자 신중 수사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돕거나 부추길 수 있는 정보 유통에 관한 단속을 전개한다. 자살유발정보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근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0월23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는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에 해당하는 자살유발정보 유통 등 행위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

개정 법률은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 ▲자살을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자살위해물건 판매 또는 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 목적의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있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사와 수사를 전개하면서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내용을 삭제, 차단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정법에 의하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경찰은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치안 협의체를 통해 조치 방향을 논의하는 등의 보호 조치 등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 법률상 긴급구조 대상자는 자살위험자 중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에 해당한다.

한편 개정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경우에 긴급구조기관에서 자료 열람 또는 요청을 한 경우에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 등도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이후에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 행위는 모두 형사처분 대상"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건물 건조기 화재

영광의 한빛원전 제2발전소 방사성폐기물건물 내부에서 불이 났지만 자체진화됐다.

11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9분께 한빛원전 2발전소 방사성폐기물건물 내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를 확인한 한빛원전 측은 소화기 등을 이용해 자체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빛원전 측은 "폐기물건물 내부에서 제염지(수분 제거용 종이)를 건조하던 중 철제 건조기 내부에서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감지가 곧바로 작동됐으며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나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침에 따라 화재를 계기로 전 원전에 대해 자체 화재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소방청, 내달까지 소방 드론 표준규격 개발

시·도 소방본부별로 제각각이던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 규격이 통일된다.

소방청은 다음달까지 소방 드론 표준규격을 개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방 드론은 2013년 11월 중앙119구조본부에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에 151대가 배치돼 산악·내수면의 조난·실종자 수색과 화재·구조 현장의 지휘관제 등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표준규격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 시·도본부별로 자체적으로 성능 기준과 형태 등의 규격을 정해 구매·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이 개발하게 될 표준규격에는 드론의 형태와 구조, 최대이륙중량, 풍속 저항능력, 최대 비행시간, 비행속도, 통신거리 등이 담기게 된다.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짐벌카메라와 열화상카메라(IR), 물품투하장치, 센서, 확성기, 탐조등 등의 성능 규격도 정한다.

특히 현장대원들의 조종 전문성과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제작사의 운용 교육과 기술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급자의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해 명시할 계획이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조과장은 "표준규격이 제정되면 소방드론 특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조종인력 양성과 드론 기체·임무별 매뉴얼 개발 등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코스모스 위 휴식 취하는 방울새 14일 오전 경남 남해군 남해읍 인근 들녘에서 방울새 한 마리가 코스모스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95개 동물단체들 "농식품부 유권해석-담양군 조치 환영"

불법 동물판매 금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과 담양군의 행정조치에 대해 동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기동물보호협회와 전국동물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5개 동물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개식용 종식에 다가서는 농식품부의 유권해석과 담양군의 불법 동물판매 금지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동물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재래시장과 시골 장터 동물에 대한 기본적 지위와 동물권을 인정한 조치로, 우리나라 동물보호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가에서 태어난 개, 고양이 등의 무허가 동물판매 금지 ▲반려 목적을 훼손하는 '집 지키는 개' '쥐 잡는 고양이' 등의 목적동물로의 규정 금지 ▲주무부처 목적에 맞게 동물보호, 동물복지 향상에 입각해 불법 동물시장 적극 단속을 촉구했다.

특히 무허가, 무등록 불법 개 번식장과 개농장 등을 철저히 단속해 개식용금지법 제정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 동물판매를 근절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이날 규탄 집회와 국민청원, 현수막 게시를 모두 중단했다.

한편 담양 5일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동물판매에 대해 최근 농식품부는 "동물 생산업자가 아닌 농가에서 생산된 강아지를 구입·판매하는 것도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이고,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의미, 동물판매업 등록제의 취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농가 등에서 사람 출입을 제한하는 등 동물 구매목적이 주로 실용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반려의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이런판결 저런판결

대법 "성폭행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했다고 무고 성립은 아냐"

"성범죄 무고 사건에도 개별 특수성 고려해야"

성폭행 고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고 해서 무고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죄 사건에서도 성범죄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같은 직장 동료 B씨를 강제추행 무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기습 입맞춤 등 강제추행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고, 성추행 전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고를 유죄로 인정했다.

B씨가 유형력 행사나 협박성 발언도 하지 않았고, 성추행 후 두려움을 느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A씨가 그대로 귀가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1심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 취지를 따라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 관계나 구체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법리는 무고죄 판단에도 마찬가지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면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밝힌 사정은 고소내용이 객관적 허위임을 뒷받침하기 부적절하다"며 "강제추행 이전에 다른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B씨의 협박 등이 있었는지는 A씨가 일순간에 기습추행 당했는지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A씨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신체접촉)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 범위를 넘어선 접촉은 거부할 자유가 있다"며 "이전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A씨가 기습추행을 동의·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의 고소 당시 주장과 1심 법정 증언 내용이 다르다는 점 역시 기습추행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